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수규 의원 발의)

제안년월일 : 2021년 09월 07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의안 번호	관련 2539
----------	------------

1. 수정이유

- 안 제3조제4항의 신설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그에 따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3조와 내용 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적용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개정안의 취지는 반영하되 현행조례 해당 조항 체계에 맞추어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3조제1항제4조)
- 나. 조례 체계 및 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함. (안 제3조제4항 삭제)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기능 등)”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바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p> <p>5. ~ 11. (생략)</p> <p>②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3조(기능 등)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 관한 사항</p> <p>5. ~ 11.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회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3조(기능) ① ----- ----- -----.</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 ----- ----- ----- ----- 관한 사항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 발주에 관한 사항</p> <p>5. ~ 11. (개정안과 같음)</p> <p>② ~ ③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바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u>관한 사항</u></p> <p>5. ~ 11.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u>관한 사항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u></p> <p>5. ~ 11.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